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35호

#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년트랙 기금교원 인사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교무과), 02-970-6023

제정 2021. 7. 2. 학칙개정 2021. 10. 1.

#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제5조제5항 및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자격, 임용, 복무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학칙개정 2021. 10. 1.)
- 제2조(적용 범위)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자격과 임용 등은 다른 법령, 본교 학칙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- 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승진임용"이란 재직 중인 교원을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정년보장교원임용"이란 「고등교육법」제14조 및「교육공무원법」제47조 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- 3. "재임용"이란 재직 중인 교원을 동일직급으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하다.
- 제4조(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직급 및 종류) ①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직급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

②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임무에 따라 산학협력연구중점교원, 산학협력교육중점 교원으로 구분한다.

#### 제2장 신규임용

- 제5조(신규임용 방법) ① 총장은 연구실적, 강의능력, 산학협력능력이 우수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갖춘 사람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다.
  - ② 신규임용은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5조의 2를 준용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
  - ③ 신규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용발령과 동시에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6조(자격) ①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3. 교육부 「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」을 충족하는 자
- ②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자격을 위한 경력 산정은 교육부 「산학협력중점교수인정기준」을 따른다.
- 제7조(신규임용 절차) ①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재외한국인학자, 외국인, 특수과목전공자 및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2조를 준용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.
  - ② 신규임용은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4조의3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되,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계약제로 임용하되,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.

1. 교수 : 3년 이내

2. 부교수 : 3년 이내

3. 조교수 : 2년 이내

제8조(신규임용자의 직급)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- 1. 임용 전까지 4년제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제13조에 따른 승진 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충족하는 사람을 해당 대학 재직 당시와 동일 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. 다만,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직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2. 임용 전까지 국·공립대학에 재직 중인 사람을 전입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
- 3. 임용 전까지 전문대학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그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. 다만,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직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4. 특별채용을 통하여 임용되는 사람으로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교육경력, 연구 경력 및 그 밖의 경력이 있으면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- 제9조(임용일)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#### 제3장 승진임용

제10조(승진임용) 총장은 교육·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생지도에 충실하며 교원으로 서 품위를 갖춘 사람을 교육실적,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. 제11조(승진임용 대상) ① 직급별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교수 : 부교수로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2. 부교수 : 조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② 1항의 재직기간(이하 "승진소요기간"이라 한다)에는 휴직, 직위해제,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「교육공무원법」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양육·임신 또는 출산의 휴직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.
- ③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산학협력분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동일직급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, 전임강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조교 수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.
- ④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.
- 제12조(승진임용 절차) ① 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임용일 5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승진임용일 5개월 전까지 발표하지 못한 연구실적물은 승진임용일 3개월 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연구실적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승진임용 심사 신청서 1부
  - 2. 승진임용 심사 실적 1부
  - 3. 연구실적 목록 1부
  - 4. 제13조에 따른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실적물 각 1부

- 5. 연구실적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- 6. 부서 자체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 등 서류 각 1부
- ③ 소속 부서장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전임교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마친 후, 승진임용일 3개월 전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, 승진임용 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총장은 대학(원)장과 부서장이 추천한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대학인사위 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승진임용한다.
- 제13조(승진임용 심사기준과 승인) ① 승진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동일직급으로 2회차 이상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재임용 기간을 가산한 연구실적을 승진임용 심사기준으로 한다. 이 때에 승진임용 심사기준은 '별표 1의 승진기준 연구실적 + (승진기준 연구실적 ÷ 승진소요연수 × 재임용기간)'으로 한다. 여기서 '재임용기간'은 최초 재임용계약일로부터 승진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를 말한다.
  - ② 소속 부서장이 자체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소속 부서의 자체심사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의 승진심사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4조(승진임용 심사) ① 대학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진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- 1.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  - 2.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

- 3.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
- 4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- 5. 대학에의 발전기여도에 관한 사항 등
- ② 승진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심사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된 3명 이상이 한다.
- ③ 제2항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직급 이상의 일반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전임교원으로 하고, 3명 중 1명 이상은 타 부서에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산학협력분야 연구실적에 관하여는 3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.
- ④ 연구실적물은 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"적합", "부적합"으로 구분 하여 평가하고, "적합"인 경우에만 인정한다.
- ⑤ 연구실적물 심사결과 제4항의 평정점 미만으로 승진이 유보된 정년트랙 기금 교원의 연구실적물 중 평정점이 모두 "적합"인 것은 승진소요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차기 승진임용 심사 때에 재심사 없이 인정한다.
- ⑥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승진임용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"정년트랙 기금교원 승진임용 심사 평정표"에 따라 심사한다.
- ⑦ 정년트랙 기금교원 승진임용 심사 평정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다.
- ⑧ 승진임용 평정 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및 최저점 수각 1개씩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계산한다.
- ⑨ 승진임용 평정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-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다.
- 1. 징계처분, 직위해제, 휴직 중인 사람

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가. 정직 : 18월

나. 감봉 : 12월

다. 견책 : 6월

3. 본교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교수 승진의 경우에는 본교 신규임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4. 제7항에 따라 심사한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인 사람

5.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총 연구실적이 별표 1의 승진기준에 미달한 자

6. 제4항에 따라 각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고 제15항에 따른 재심사에서 승진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

7. 예정증명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아 부서의 자체심사를 마친 사람으로서 승 진임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부서의 자체심 사기준에 미달되는 사람

8. 대학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

⑪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.

1. 교수 승진 : 4년 이내

2. 부교수 승진 : 3년 이내

제15조(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) ①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인정범위는 승진임용 예정일 전일기준 해당 직급의 총 임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로서 승진임용 3개월 전까지 본교 소속으로 수행한 별표 2에서 정한 산학협력분야 연구실적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실적물로서 승진임용 1개월 전까지 수행한 연구실적물은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

물로 인정한다.

- ③ 산학교육중점교원은 별표 2의 산학교육 실적이 승진 총 요구실적의 50% 이상이어야 하고, 별표 2의 교외연구비 실적의 경우 승진 총 요구실적의 25%까지만인정한다.
- ④ 산학연구중점교원은 별표 2의 교외연구비 및 기술이전, 창업지도 실적만을 승진 요구실적으로 인정하고, 별표 2의 창업지도 실적의 경우 승진 총 요구실적의 10%까지만 인정한다.

제16조(연구실적물의 인정률)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
- 제17조(승진임용 재심사) ① 소속 부서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총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소속 부서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재심사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  - ③ 대학인사위원회는 재심사 결과 승진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진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.
- 제18조(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정년보장교원임용) ① 교육·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생지도에 충실하며 교원으로서 품위를 갖춘 사람은 교육실적,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할 수 있다.
  - ② 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1. 교수로 승진임용 예정인 사람
  - 2. 제5조에 따라 교수로 신규임용된 사람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년보장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
  - 3. 제10조에 따라 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년보장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
  - 4. 제19조에 따라 교수로 재임용된 사람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년보장임용을

받고자 하는 사람

- 5. 제10조에 따라 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 중 제11항에 따라 정년보장교원임용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
- ③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"정년트랙 기금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표"에 따라 심사한다.
- ④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다.
- ⑤ 정년보장교원임용 평정 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각 1개씩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계산한다.
- ⑥ 정년보장교원임용 평정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- ⑦ 연구실적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.
- ⑧ 정년보장교원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정년보장교원임용 예정일 전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로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의 신청일까지 본교 소속으로 발표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로 한다.
- 1.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: 부교수 직급의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물
- 2.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: 교수 직급의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물
- 3.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: 교수 직급 및 부교수 직급의 임용기 간 중 연구실적물
- 4.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. 제5조에 따라 교수로 신규임용된 사람 : 교수 직급의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물 나. 제10조에 따라 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 : 교수 직급 및 부교수 직급의 임용 기간 중 연구실적물

- ⑨ 연구실적물 인정률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- ① 제8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실적물로서 정년보장교원임용 1개월 전까지 제출한 연구실적물은 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.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보장교원임용을 하지 아니한다.
- 1. 제3항에 따라 심사한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인 사람
- 2.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
- 3. 본교 신규 임용 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4. 제8항 및 별표 2 등에 따라 계산한 총 연구실적이 160퍼센트 미만인 사람 제19조(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재임용) ①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교육실적,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  - ② 신규임용, 승진임용, 재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을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.
  - ③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.
- 제20조(재임용 절차)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 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(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재임용 심사 신청서 1부
  - 2. 연구실적 목록 1부

- 3. 해당 연구실적물 각 1부
-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마친 후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 및 불복처리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재임용 심사) ①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"정년트랙 기금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"에 따라 심사한다.
  - ② 재임용 심사 평정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다.
  - ③ 재임용 평정 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씩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계산한다.
  - ④ 재임용 평정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  - ⑤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따른다.
  - ⑥ 연구실적물 인정률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- 제22조(재임용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.
  - 1. 별표 1에 따른 승진을 위한 총 연구실적의 50퍼센트 미만인 사람
  - 2.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인 사람
  - 3. 대학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
  - ②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재임용시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(다만, 임용기간
  - 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)
  - ③ 소속 부서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재임용 심사 이전에 자체 심사기준과 절차에

따라 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임용 심사를 할 수 있다.

④ 소속 부서의 자체 심사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4장 처우 및 임무 등

- 제23조(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처우) ①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.
  - ②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전체교수회의, 학부(과)회의, 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, 학칙 제17조의 부속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직을 겸임할 수 있다.(학칙개정 2021. 10. 1.)
  - ③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급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④ 정년트랙 기금교원이 기본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4조(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임무) ①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교육, 연구,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- ②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, 산학교육중점교원은 6시간으로 하며 해당교원을 초빙한 부서가 강의할 교과목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 - ③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취업, 창업, 현장실습 지원 등 산학협력업무에 충실해야한다.
  - ④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교과담당 학생들의 학업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.
  - ⑤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소속 부서의 교무와 학사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·지원

하여야 한다.

- ⑥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임용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과 학술활동에서 본교 소속 임을 밝혀야 한다.
- ⑦ 정년트랙 기금교원은 총장의 승인 없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직무를 겪할 수 없다.
- 제25조(정년트랙 기금교원의 복무)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근무시간,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- 제26조(정년트랙 기금교원의 면직) 총장은 정년트랙 기금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  - 1. 임용기간 중 법령, 규정 또는 계약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- 2. 「국가공무워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3. 교육 또는 연구실적이 부진한 경우
  - 4.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- 5. 신체·정신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  - 6. 임용시 제출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용된 경우
  - 7. 기금과실의 규모가 정년트랙 기금교원에게 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된 경우
- 제27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(제623호, 2021. 7. 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 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)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승진 및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 기준

(제13조제1항 관련)

구분	총 연구실적
부교수 승진	ㅇ 80% 이상
교수 승진	○ 130% 이상
정년보장교원	○ 160% 이상

[참고] 동일직급으로 2회차 이상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승진임용 심사기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'별표 1의 승진기준 연구실적 + (승진기준 연구실적 ÷ 승진소요연수 × 재임용기간)'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.

- 예) 본교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년을 근무하고, 다시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1년 1개월 근무(총 5년 1개월)한 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은,
- ☞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: 80% + (80% ÷ 3년 × 3년 1개월) =160%
  - 승진기준 연구실적: 80%
  - 승진소요연수: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
  - 재임용 기간: 1회차 재임용 기간(2년) + 2회차 재임용 기간(1년 1개월) = 3년 1개월
    - ※ 연구실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

### 정년트랙기금교원의 산학협력 분야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

(제15조제1항 관련)

	I I
인정률	비고
학생 1명당 0.2%	<ul><li>최대 8퍼센트에 한정하여 인정</li><li>기업체협약서,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</li></ul>
학기당 15%	<ul><li>최대 90퍼센트에 한정하여 인정</li><li>개설책임자는 당해년도만 인정</li></ul>
기관(기업) - 학생 1명 매칭 시 1%	- 최대 50명에 한정하여 인정. 다만, 취업 담당 부서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음
기관(기업) 말굴 I 건당 1%	- 최대 50건에 한정하여 인정. 다만, 취업 담당 부서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음
1건당 2.5%	<ul><li>최대 20건까지 인정</li><li>기업체협약서, 기업체 기술지도. 자문요청서, 기술 지도·자문보고서,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</li></ul>
기관(기업) —학생 1명 취업 시 1%	- 최대 50명에 한정하여 인정. 다만, 취업 담당 부서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음
전	
1천만원당 1.2%	- 해당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외부에서 수주 및 연구한 연구과제(R&D) 실적을 의미
1천만원당 1.2%	<ul> <li>해당 교원이 수주에 기여한 사업</li> <li>연차사업의 경우, 수주시점에 전체 실적을 인정</li> <li>외부에서 우리대학에 지원된 지원금만 해당(대학대응자금, 현물, 타 기관 배정 금액은 제외)</li> </ul>
1천만원당 0.2%	<ul><li>해당 교원이 사업을 운영한 실적(결과보고서 등 사업참여인력으로 등재 시 인정)</li><li>사업 참여기간의 사업비 금액으로 인정(대학대응자금, 현물, 타 기관 배정 금액은 제외)</li></ul>
	학생 1명당 0.2% 학기당 15% 기관(기업) -학생 1명 매칭 시 1% 기관(기업) 발굴 1 건당 1% 1건당 2.5% 기관(기업) -학생 1명 취업 시 1% 전 1천만원당 1.2%

라. 기술이전 기여	1천만원당 0.5%	<ul> <li>산학협력단에 등록된 타인의 기술 이전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(본인의 기술이전 실적 인정 불가)</li> <li>발명자의 기술료 보상 신청서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기 여자보상금을 지급한 실적만 인정</li> </ul>
3. 창업지도		
가. 기업(기관) 창업 지도	기관(기업) - 교원 (또는 학생) 창업 시 1건당 1.5%	- 최대 20건까지 인정 - 창업지도·자문보고서, 사업자등록증 제출 실적만 인정
나. 정부창업지원사업(투자 유치, R&D, R&BD 사업 포함) 연계		- 정부창업지원사업 선정 협약서 제출

#### [참고]

- 1. 산학연구중점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3시간, 산학교육중점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6시간
- 2. 산학교육중점교원은 "1. 산학교육"실적은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50% 이상이어야 하고, "2. 교외연구비 및 기술이전 실적"은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25%까지만 인정됨.
- 3. 산학연구중점교원은 "2. 교외연구비 및 기술이전 기여" 및 "3 창업지도" 및 실적만을 승진요구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, "2. 창업지도" 실적은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10%까지만 인정함.
- 4. "1-다.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"의 "기관(기업) 발굴" 실적은 발굴한 기관(기업)에 학생을 1명 이상 매칭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 발굴 기관(기업)에 최초 1명 매칭 시에는 "기관(기업)-학생 1명 매칭" 지표도 중복 인정함. "기업(기관) 취업 지도"의 "기관(기업)-학생 1명 취업" 지표는 "기관(기업) 발굴", "기관(기업)-학생 1명 매칭" 지표 실적과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.
- 5. "2. 교외연구비(2-가, 2-나, 2-다)"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.
  - 1) 재정지원사업 및 산업체 사업 수주실적은 최초 수주(계약) 시점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 타 교원 등으로부터 중개·알선 받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
  - 2) 공동수주 및 운영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2/(1+n)를, 참여연구원은 1/(1+n)을 실적으로 인정
  - 3) 사업기간 중 운영 담당자가 변경 될 경우, 기간에 비례하여 인정
- 6. "2. 기술이전(2-라)" 실적 인정 시,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.
- 7. "3-나. 정부창업지원사업 연계"실적이 "2. 교외연구비"실적에 해당되는 과제 및 재정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.

### 정년트랙 기금교원 승진임용 심사 평정표

<b>심사대상자</b> 소속 : 직급 : 성명 :	심사대상자	1 1	식급 :	´Ö´Ö •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	------	--------	--

-1-1	->	평정기준 및 점수		-1 -1	
평정	항목	평정기준	점수	평점	평정방법
1. 연구실	적	○ 부교수 승진의 경우 총연구실적 80%이상 ○ 교수 승진의 경우 총연구실적 130%이상	40		○(산학협력교육중점교원) 별표2의 산학교육은 승진요구 총 연구실 적의 50%이상 이어야 하고, 별표2의 교외 연구비 실적은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25%까지만 인정한다. ○(산학협력연구중점교원) 별표2의 창업지도, 교외연구비 및 기술 이전 실적으로 평정한다. 단, 별표2의 창업지도는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10%까지만 인정한다.
2. 강의충실도		강의평가결과 활용	20		○ 2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. ○ 승진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 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.
	인격 및 품위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10 8 6 4 2		○ 교수로서의 인격, 품위,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3. 직무태도	직무수행 능력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10 8 6 4 2		○산학협력을 위한 추진력, 기획력, 협상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	근 무 자 세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20 15 10 8 5		○법령의 준수 여부, 성실성,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4. 상벌 (가감점)	훈포장 등	훈·포상(5), 대통령표창 (3), 국무총리·장관표창 (1), 정직(-5), 감봉(-3), 견 책(-1)	5		○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·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여 적용한다. 단,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.
	7	명점계	105		

<sup>※</sup> 본 평정표는 밀봉・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평정자 (직위) (성명)

(인)

### 정년트랙 기금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표

- 산학협력교육중점교원 -

심사대상자	소속 :	직급 :	성명 :	
-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

평정항목	3	평정기준 및 점수 평정기준	점수	평점	평정방법
1. 연구실적	총 연구실적+(200% 이상) 총 연구실적+(100% 이상~200%미만) 총 연구실적+(50% 이상~100%미만) 총 연구실적+(0~50% 미만)		40 30 20 10		○ 별표2의 산학교육은 승진 총요구실적의 50%이상 이어야 하고, 별표2의 교외연구비 실적은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25%까지 만 인정한다. * 총 연구실적: 160%
2. 강의충실도	강의평가결과 활용		30		○3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. ○ 정년보장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.
	인격 및 품위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10 8 7 6 4		○교수로서의 인격, 품위,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3. 직무태도	근 무 자 세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20 15 10 8 5		○ 법령의 준수 여부, 성실성, 책임성 등을 고려 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4. 상벌(가감점)	훈·포장 등	훈·포장(5), 대통령표창(3), 국무총리·장관표창(1) 정직(-5), 감봉(-3), 견 책(-1)	5		○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·처분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여 적용 한다. 다만,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 한다.
	평점계		105		

※ 본 평정표는 밀봉・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평정자 (직위)

(성명)

(인)

### 정년트랙 기금교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표

- 산학협력연구중점교원 -

심사대상자	소속 :	직급 :	성명 :	
-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

평정항목	3	평정기준 및 점수	기스	평점	평정방법
1. 연구실적	평정기준 총 연구실적+(200% 이상) 총 연구실적+(100% 이상~ 200%미만) 총 연구실적+(50% 이상~ 100%미만)		정수 50 40 30		○별표2의 창업지도, 교외연구비 및 기술 이전 실적으로 평정한다. 단, 별표2의 창 업지도는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10% 까지만 인정한다.
2. 강의충실도	총 연구실적+(0~50% 미만) 강의평가결과 활용		20		*총 연구실적 : 160%  ○ 2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점수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.  ○ 정년보장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.  ○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강의가 없을 시에는 평정점수는 16점으로 한다
3. 직무태도	인격 및 품위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10 8 7 6 4		○교수로서의 인격, 품위,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J. 4THI	근 무 자 세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20 15 10 8 5		○ 법령의 준수 여부, 성실성, 책임성 등을 고려 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4. 상벌(가감점)	훈포장 등	훈포장(5), 대통령표창(3), 국무총리·장관표창(1), 정직(-5), 감봉(-3), 견책(-1)	5		○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·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여 적용한다. 다만,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.
	평점계		105		

※ 본 평정표는 밀봉·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평정자 (직위)

(성명)

(인)

# 정년트랙 기금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

- 산학협력교육중점교원 -

심사대상자	소속 :	직급 :	성명 :	
-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

평가분야	평정항목	평정기준 및 점수		평점	평정방법
%/।⊞প	37837	평정기준	점수	<b>3</b> 4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1. 교육	강의충실도	강의평가결과 활용	30		○3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점수 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. ○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간 의 실적을 평가한다.
2. 연구	연구실적	총 연구실적+(40% 이상) 총 연구실적+(20~40% 미만) 총 연구실적+(0~20% 미만)	30 20 10		○ 별표2의 산학교육은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50%이상 이어야 하고, 별표 2의 교외연구비 실적은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25%까지만 인정한다. ○ 직급별 연구기준 실적을 초과하는 실적 을 활용하여 평가한다.
	인격 및 품위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10 8 6 4 2		○교수로서의 인격, 품위,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3. 직무태도	직무수행 능력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10 8 6 4 2		○산학협력을 위한 추진력, 기획력, 협상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	근무자세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20 15 10 8 5		○법령의 준수 여부, 성실성,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4. 상벌 (가감점)	훈·포장 등	훈·포장(5), 대통령표창(3), 국무총리·장관표창(1) 정직(-5), 감봉(-3), 견책(-1)	5		○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·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 하여 적용한다. 다만,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.
	평?	점계	105		

※ 본 평정표는 밀봉・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평정자 (직위)

(성명)

(인)

# 정년트랙 기금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

- 산학협력연구중점교원 -

심사대상자	소속 :	직급 :	성명 :	
-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

평가분야	평정항목	평정기준 및 점수		평점	평정방법
		평정기준	점수	<b>~</b> 7∂	শ্ব পি পি শ্ব
1. 교육	강의충실도	강의평가결과 활용	20		○ 2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점수 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. ○ 재임용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간의 실적을 평가한다. ○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강의가 없을 시 에는 평정점수는 16점으로 한다
2. 연구	연구실적	총 연구실적+(40% 이상) 총 연구실적+(20~40% 미만) 총 연구실적+(0~20% 미만)	40 30 20		○ 별표2의 창업지도, 교외연구비 및 기술 이전 실적으로 평정한다. 단, 별표2의 창업지도는 승진요구 총 연구실적의 10%까지만 인정한다. ○ 직급별 연구기준 실적을 초과하는 실적 을 활용하여 평가한다. *총 연구실적은 별표1 직급별 승진요구 실적의 2분의 1을 의미
3. 직무태도	인격 및 품위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10 8 6 5 2		실식의 2분의 1을 되미 ○교수로서의 인격, 품위, 인화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	직무수행 능력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10 8 6 4 2		○ 산학협력을 위한 추진력, 기획력, 협상 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	근무자세	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	20 15 10 8 5		○법령의 준수 여부, 성실성,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.
4. 상벌 (가감점)	훈·포장 등	훈·포장(5), 대통령표창(3), 국무총리·장관표창(1) 정직(-5), 감봉(-3), 견책(-1)	5		○ 현 임용계약기간 동안 수여·처분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 하여 적용한다. 다만,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.
평점계			105		

<sup>※</sup> 본 평정표는 밀봉・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평정자 (직위)

(성명)

(인)